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포함한다)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포함한다)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